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89

발의연월일: 2023. 9. 4.

발 의 자:한정애·송옥주·김홍걸

박홍근 • 전혜숙 • 김상희

강훈식 · 김영주 · 이성만

장철민 · 윤미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

2).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 항)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7항과 제8항을"을 "제8항과 제9항을"로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 ⑥ (생	구축·운영 등)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권	
	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한다)	
	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u>야 한다.</u>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u>⑧</u> 시·도지사는 <u>제7항에</u> 따른	<u> ⑨</u> <u>제8항에</u>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 · 도 재난 예보 ·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		
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9	• 10	(생	략)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 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u>제7항과 제8</u> 항을 준용한다.

① (생략)

<u>⑩</u> · <u>⑪</u> (현행 제9항 및 제10항
과 같음)
<u> </u>
<u>제8항과 제9항을</u>
◎ (현행 제12항과 같음)